

2016년도 소재부품기업 성장통극복지원사업 주요내용 Q&A

2015. 12.

Q1. 본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 및 지켜야할 사항은 ?

- * 답변 :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성장통을 겪고 있는 소재·부품 중소기업의 성장통극복지원을 통하여 소재부품 중견기업군으로 육성하고자 함
- ① 기업정밀진단 및 기술클리닉, 경영클리닉 지원 시 기업 참여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
- ② 기업선정 및 협약 후 2주 이내 현금부담금 납부(총 사업비의 25% 이상 -민감 부담금 총액의 10% 현금, 나머지는 현물)

Q2. 다른 사업과의 차이점은 ?

- * 답변 : 성장통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클리닉, 경영클리닉, 신성장아이템 발굴을 통해 기업성장 지원

Q3. 지원 자격은?

- * 답변 : (신규사업)업력 5년 이상, 매출액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억원 이상 ~ 1,000억원 이하인 기업,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동종 산업계의 평균 매출성장률 미만인 기업

(계속사업)14년, 15년 본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추가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거나, 신성장아이템의 사업화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기업

- 사업신청 서류 접수 후 발표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 최종선정

Q4. 사업신청 방법은?

- * 답변 : e-메일로 신청서류 접수 함(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 출력본에 한함)

Q5. 사업비 배분?

- * 답변 : 기업당 연간 정부출연금 1억원 이내 지원
- 정부출연금 :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% 이내에서 지원
- 민간부담금 : 정부출연금이외에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을 부담(민감부담금 총액의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, 나머지는 현물로 제공)

지원금액 예시

▣ 정부출연금 75%, 민간부담금 25%(민간부담금 총금액의 10%이상 현금, 나머지는 현물)로 구성

※지원금액 : 정부지원금(1억) + 민간부담금(현금10% 350만원 + 현물90% 3,150만원) = 1억 3,500만원

※현물은 참여기업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주로 계상함

※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% 이상,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% 이상으로함

Q6. 사업관련 참여기업의 연구비(외부인건비, 직접비) 지급가능 여부?

* 답변 : 연구비의 기업 직접 지원은 불가. 본 사업은 기관 주요사업이며, 주요사업의 수행주체는 내부 연구원이 수행하고 집행하여야 함

Q7. 사업 참여 기준 계산(예시)

계산방법

■ 최근3년간 평균매출성장률(CAGR)

- 최근 3년간 평균매출성장률 = { (2014년도 매출액 ÷ 2012년도 매출액)^{1/2} } -1

예시

구분		2012	2013	2014	'12~'14 평균매출 성장률	동종 산업 평균매출 성장률	지원 가능 여부
매출액 (백만원)	1) A기업 (1차금속기업)	18,831	16,988	22,560	9.5%	11.77%	○
	2) B기업 (전자부품기업)	18,831	23,240	27,260	20.3%	10.44%	X

※ A기업(1차 금속 기업)의 경우,

- 최근 3년간 평균매출성장률(9.5%)이 동종 산업계의 평균매출성장률(11.77%) 보다 낮으므로 사업 지원 가능

※ B기업의(전자부품 기업)의 경우

- 최근 3년간 평균매출성장률(20.3%)은 동종 산업계의 평균매출성장률(10.44%) 보다 높으므로 사업 지원 불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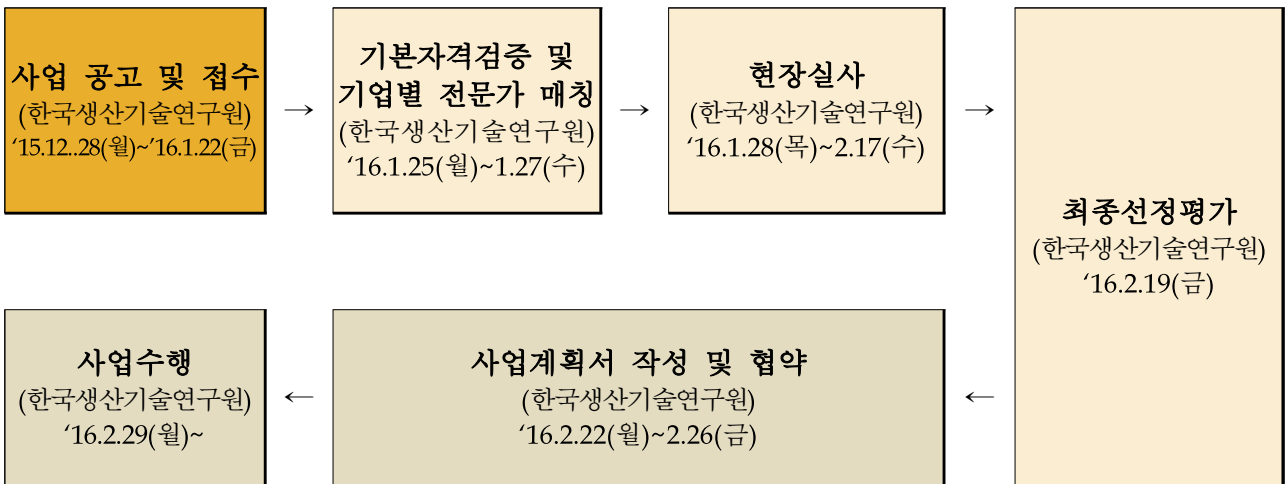
Q8. 동종산업 평균매출 성장률 지표는?

Code.	산업	평균매출성장률(%)
13	섬유제품 제조업, 의복제외	0.38
17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3.22
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	7.11
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6.00
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4.56
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-0.26
24	1차 금속 제조업	1.26
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	4.56
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-1.62
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2.09
28	전기장비 제조업	4.88
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.27
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5.59
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9.99
32	가구 제조업	16.71

자료 :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(2014)

Q9. 사업선정 절차는?

* 답변 : 사업 신청 접수[2015.12.28(월) ~ 2016.01.25.(월)] 이후 아래의 순서로 진행됨



Q10. 계속사업 지원 사항은?

- * 답변 : 추가기술클리닉, 기술사업화로 구분되며 기업의 필요시 모두 선택할 수 있음
- 추가기술클리닉 : 성장통과제 수행 후 추가적인 기술클리닉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기술지원
- 신성장아이템 사업화 : 신성장아이템의 글로벌 시장진출 로드맵 구축 및 사업화지원